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기관장 결격 요건에 역사왜곡 등 행위자 추가〉

■ 윤호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106호)

■ 황명선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493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1.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 결격 요건에 역사왜곡 등 행위자 추가 (안 제34조제4항 신설)	4

I. 제안경위

1. 윤호중의원안

가. 발 의 자 : 윤호중의원 등 16인

나. 발 의 일 : 2024. 8. 22.

다. 회 부 일 : 2024. 8. 23.

2. 황명선의원안

가. 발 의 자 : 황명선의의원 등 15인

나. 발 의 일 : 2024. 9. 2.

다. 회 부 일 : 2024. 9. 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윤호중의원안

대한민국헌법 전문은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 전문에도 불구하고 일제 식민지배와 전쟁범죄를 미화하거나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고, 그 행위자가 독립운동, 역사 관련 기관의 장이나 장·차관직에 버젓이 임명

되고 있음.

헌법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이들이 대한민국의 주요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는 주요 공직에 진출하는 것이야말로 반헌법적, 반역사적 사태라 할 수 있음.

이에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게시 또는 상영,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의 방법으로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배와 전쟁범죄를 정당화·미화·왜곡하거나 찬양·고무·선전하거나 헌법 전문 또는 역사적 사실을 부인·왜곡·날조한 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하여 헌법 정신을 지키고 대한민국 역사를 올바르게 계승·발전시키려는 것임(안 제34조제4항 신설).

2. 황명선의원안

국가공무원은 헌법상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 대한민국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여야 함.

그러나, 최근 헌법과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부인·날조하는 발언을 하는 인물을 장·차관, 공공기관의 장으로 지명하거나 임명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일부 국가기

관과 공공기관 등이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명백히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에 대하여 군 교재에서 삭제하거나 분쟁지역으로 표현하고 관련 조형물들을 철거하는 등 향후 공직에 나서는 자들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역사적 왜곡·날조 역시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게시 또는 상영,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의 방법으로 국경일 내지 기념일의 대상이 되는 역사적 사실을 부인·왜곡·날조하거나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영해 및 영공 등 그 사실에 대하여 부인·왜곡·날조한 자를 공공기관의 장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직사회에서 우리나라 헌법 가치와 역사의식 및 영토주권의 인식 등을 바로 세우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34조).

Ⅲ. 검토의견

1.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 결격사유에 역사왜곡 등 행위자 추가(윤호중·황명선의원안 제34조)

현 행	윤호중의원안	황명선의원안
○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 또는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신 설)	○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 결격사유 - (현행과 같음) - <u>신문·잡지·방송·출판물·정보통신망의 이용, 전시물·공연물 등의 전시·게시·상영, 토론회·기자회견·집회 등에서 발언</u> - <u>일본 제국주의 식민지배 및 전쟁범죄에 대한 정당화·미화·왜곡하거나 찬양·고무·선전, 헌법전문 또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부인·왜곡·날조</u>	○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 결격사유 - (현행과 같음) - <u>신문·잡지·방송·출판물·정보통신망의 이용, 전시물·공연물 등의 전시·게시·상영, 토론회·기자회견·집회 등에서 발언</u> - <u>국경일의 대상이 되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부인·왜곡·날조, 정부주관 기념일의 대상이 되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부인·왜곡·날조, 영토영해 및 영공 등 그 사실에 대한 부인·왜곡·날조</u>

현행법 제34조¹⁾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제69조의 결격사유나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2조제1항, 제31조제7항,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제2항, 제48조제4항·제8항 및 제52조의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공기관은 단순히 정부의 정책을 실행하는 기관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며, 공공기관을 대표하는 기관장의 리더십에 따른 사회적 영향력 또한 크다고 볼 수 있음.

개정안은 신문·잡지·방송·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²⁾의 이용,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게시 또는 상영,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의 방법으로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배와 전쟁범죄를 정당화·미화·왜곡하거나 헌법전문 또는 역사적 사실을 부인·왜곡·날조한 자(윤호중의원안)” 및 “국경일 또는 정부 주관 기념일의 대상이 되는 역사적 사실을 부인·왜곡·날조하거나 영토, 영해 및 영공 등의 사실을 부인·왜곡·날조한 자(황명선의원안)”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에 임명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에 추가하여 헌법 정신을 지키고 역사를 올바르게 계승·발전시키고자 하려는 것으

3제3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2. 임명 당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로 입법 취지에 공감되는 측면이 있음.

다만, ‘정당화·미화·왜곡’이나 ‘부인·왜곡·날조’ 등의 용어는 해석에 따라서는 의미가 다의적이고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헌법상 권리인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등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며, 각각의 개정안은 시간의 제한, 사유 해소 등의 가능성이 없이 영구적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 임용 자격을 박탈하고 있는바, 헌법상의 원칙인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기획재정부는 전쟁범죄의 정당화·미화·왜곡 등의 범위가 매우 불확정적으로 결격사유 적용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우려가 있으며, 임원추천위원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등 임용과정에서도 객관적 판단이 어렵고, 임용 후에도 기관장 자격 관련 분쟁·논란 등이 우려된다는 입장임.

참고로, 최근 헌법재판소는 미성년 대상 성범죄로 형확정시 영구적으로, 결격사유가 해소될 가능성도 없이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군인사법」 제10조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

정3)을 내린 바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 3) [헌법불합치, 2020헌마1181, 2022.11.24, 국가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57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6호의4 나목 중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2호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 및 군인사법(2019. 1. 15. 법률 제16224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2항 제6호의4 나목 중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2호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들은 2024. 5.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윤호중의원안	황명선의원안
제34조(결격사유) ① ~ ③ (생략) <u><신 설></u>	제34조(결격사유) ① ~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관장이 될 수 없다. 1.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게시 또는 상영,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 발언의 방법으로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배와 전쟁범죄를 정당화·미화·왜곡하거나 찬양·고무·선전한 사람 2.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게시 또는	제34조(결격사유) ① ~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관장이 될 수 없다. 1.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게시 또는 상영,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의 방법으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경일의 대상이 되는 역사적 사실을 부인·왜곡·날조한 자 2.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게시 또는 상영, 그

현행	윤호중의원안	황명선의원안
	<u>상영,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 발언의 방법으로 헌법전문 또는 역사적 사실을 부인·왜곡·날조한 사람</u>	<u>밖에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각종 정부 주관 기념일의 대상이 되는 역사적 사실을 부인·왜곡·날조한 자</u> 3. <u>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게시 또는 상영,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의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영해 및 영공 등 그 사실에 대하여 부인·왜곡·날조한 자</u>

문의처

02)6788-5148